

## 충청남도 고시 제2024-278호

###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

충청남도 고시 제2024-207호(2024.04.22.)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4-207호(2024.04.22.)와 같음으로 생략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충청남도지사

#### 1. 관리할 산업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

가. 명 칭 :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(변경없음)

나. 관리기관 : 아산시(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)(변경없음)

다. 조성목적(변경없음)

- 산업단지 여건 및 국내 산업동향 등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
- 아산만권 산업여건변화에 따라 첨단IT, 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
- 서해안 시대를 대비한 환황해권 중심거점으로 아산만권 산업클러스터의 보조적 역할 수행
-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원기능을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역소득증대
- 산업단지 입주종사자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

라. 단지의 개요(변경없음)

구 분	기 정
위 치	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-8번지, 갈산리 627-1번지 일원
면 적	685,379m <sup>2</sup>
사업기간	2013년 ~ 2024년
사업시행자	(주)탕정테크노파크 대표이사 황한분, 정경서
사업시행방법	민간개발방식

### 마. 추진경위(변경)

- 2013. 02. 18 : 투자의향서 접수 (사업시행자 → 충청남도)
- 2013. 12. 27 :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(사업시행자 → 충청남도)
- 2015. 11. 27 :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(충청남도 고시 제2015-393호)
- 2018. 10. 19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8 - 344호)
- 2019. 12. 20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19 - 1200호)
- 2020. 12. 10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0 - 522호)
- 2021. 05. 10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1 - 179호)
- 2022. 08. 01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2 - 294호)
- 2023. 06. 12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3 - 273호)
- 2023. 10. 04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3 - 439호)
- 2023. 10. 20 :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2023 - 460호)
- 2024. 02. 13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4 - 81호)
- 2024. 04. 22 :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(충청남도 고시 제 2024 - 207호)

## 2.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

### 가. 입주대상 업종(변경없음)

코드	입주대상업종	비고
C20	화학물질 및 화학약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
C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
C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C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
C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기계 및 가구 제외	
C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
C28	전기장비 제조업	
C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
C32	가구 제조업	
C33	기타 제품 제조업	
J58	출판업	
J59	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	
J60	방송업	
J61	통신업	
J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
J63	정보서비스업	
M70	연구개발업	
M71	전문서비스업	
M72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
M73	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

## 나. 입주제한업종(변경없음)

- 대기배출시설 1종사업장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4조 별표2)
- 대기오염물질 벤젠, 포름알데히드 배출 업체
  - ※ 단, 대기오염물질 배출시(특정대기 유해물질 포함) 해당 개별공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
  -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[재협의를](2017.1) 제7장 p883
- 수질관련 1종사업장(「물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44조 별표13)

### 별도배출허용기준

(단위 : mg/L)

항 목	BOD	TOC	SS	T-N	T-P	비 고
전처리기준	300.0	170.0	300.0	60.0	8.0	

주) 공장폐수 : TOC : COD<sub>Mn</sub> = 1 : 1.8, 생활오수 : TOC : COD<sub>Mn</sub> = 1 : 1.2 적용

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보고서(2020.09) 제2장 p69,71

- ※ 단, 수질오염물질 배출시(특정수질 유해물질) 별도 배출허용기준 승인고시 또는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보고서(2020.09) 제2장 p69, 71

## 다. 입주자격(변경없음)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

## 라. 입주우선순위(변경없음)

-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체
-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
-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(확장) 업체
-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
-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

## 마. 입주절차(변경없음)

- ① 입주신청 :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
- ② 입주심사 : 서류심사
- ③ 면 접 : 관리기관의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면접
- ④ 입주계약 : 아산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
- ⑤ 입 주

### 3.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

#### 가. 용도별 분양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구성비(%)		분양여부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유상(m <sup>2</sup> )	무상(m <sup>2</sup> )
계		685,379	685,379	100	100	411,694	273,685
산업시설 구역	소 계	236,789	236,789	34.5	34.5		
	화학물질 및 화학약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13,127	13,127	1.9	1.9	○	
	전자제품,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38,557	132,147	20.2	19.3	○	
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17,854	24,264	2.6	3.5	○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	32,902	32,902	4.8	4.8	○	
	복 합 용 지 ( 지식 산업 센터 )	34,349	34,349	5.0	5.0	○	
지원 시설 구역	소 계	174,905	174,905	25.5	25.5		
	공 동 주 택 용 지	136,974	136,974	20.0	20.0	○	
	지 원 시 설 용 지	9,143	9,143	1.3	1.3	○	
	학 교	27,036	27,036	3.9	3.9	○	
	주 차 장	1,752	1,752	0.3	0.3	○	
공공 시설 구역	소 계	114,331	114,331	16.7	16.7		
	도 로	87,341	87,341	12.7	12.7		○
	보 행 자 전 용 도 로	1,896	1,896	0.3	0.3		○
	주 차 장	8,497	8,497	1.2	1.2		○
	관 리 사 무 소	1,043	1,043	0.2	0.2		○
	오 폐 수 시 설	4,136	4,136	0.6	0.6		○
	유 수 지	11,418	11,418	1.7	1.7		○
녹지 구역	소 계	159,354	159,354	23.3	23.3		
	근 린 공 원	33,291	33,291	4.9	4.9		○
	소 공 원	6,359	6,359	0.9	0.9		○
	완 충 녹 지	119,704	119,704	17.5	17.5		○

나.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구성비(%)		분양여부		관리처분 사항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유상(m <sup>2</sup> )	무상(m <sup>2</sup> )	
계		685,379	685,379	100	100			
산업시설 구역	소 계	236,789	236,789	34.5	34.5			
	화학물질 및 화학약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13,127	13,127	1.9	1.9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38,557	132,147	20.2	19.3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17,854	24,264	2.6	3.5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2,902	32,902	4.8	4.8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복합용지 (지식산업센터)	34,349	34,349	5.0	5.0	○		수요자 자체관리
지원시설 구역	소 계	174,905	174,905	25.5	25.5			
	공동주택용지	136,974	136,974	20.0	20.0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지원시설용지	9,143	9,143	1.3	1.3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학교	27,036	27,036	3.9	3.9	○		수요자 자체관리
	주차장	1,752	1,752	0.3	0.3	○		수요자 자체관리
공공시설 구역	소 계	114,331	114,331	16.7	16.7			
	도로	87,341	87,341	12.7	12.7		○	아산시장 관리
	보행자전용도로	1,896	1,896	0.3	0.3		○	아산시장 관리
	주차장	8,497	8,497	1.2	1.2		○	아산시장 관리
	관리사무소	1,043	1,043	0.2	0.2			
	오페수시설	4,136	4,136	0.6	0.6		○	아산시장 관리
	유수지	11,418	11,418	1.7	1.7		○	아산시장 관리
녹지 구역	소 계	159,354	159,354	23.3	23.3			
	근린공원	33,291	33,291	4.9	4.9		○	아산시장 관리
	소공원	6,359	6,359	0.9	0.9		○	아산시장 관리
	완충녹지	119,704	119,704	17.5	17.5		○	아산시장 관리

다. 용도지역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	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고
계		685,379	100	
공업지역	소 계	501,856		
	일반공업지역	368,258	53.7	
	준공업지역	133,598	19.5	
주거지역	소 계	159,978		
	제2종일반주거지역	159,978	23.4	
녹지지역	소 계	23,545		
	자연녹지지역	23,545	3.4	

라. 용도별 구역 면적(변경없음)

총면적(m <sup>2</sup> )	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(m <sup>2</sup> )			
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685,379	236,789	174,905	114,331	159,354

4.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

가. 배치기준(변경없음)

- 업종배치계획에 적합한 공장 배치
-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 업종별 배치
- 환경별(소음 및 진동, 대기 및 악취 등) 측면을 고려한 배치

나. 업종별 공장배치계획(변경)
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업체수	부지면적(m <sup>2</sup> )	업체수	부지면적(m <sup>2</sup> )	
계	15	236,789	15	236,789	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: 의약품제외	3	13,127	3	13,127	
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6	138,557	5	132,147	
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1	17,854	2	24,264	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4	32,902	4	32,902	
복합용지(지식산업센터)	1	34,349	1	34,349	

-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며,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에 따른 중분류는 C25~C33, J58~J63, M70~M73에 해당함.

5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가. 단지내 도로(변경없음)

○ 1공구(변경없음)

구분		규 모				연장(m)	관리처분사항
		등 급	류 별	번 호	폭원(m)		
12 노선 (면적 : 38,852 m <sup>2</sup> )							아산시장 관리
기정	집산도로	중로	2	31	16	462	
기정	국지도로	중로	2	32	16	288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1	13	408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2	14	258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3	14	107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4	12	203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5	12~13	395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6	13	37	
기정	국지도로	소로	1	101	10.5	187	
기정	국지도로	소로	1	102	10.5	496	
기정	특수도로	소로	2	101	8	41	
기정	국지도로	소로	2	102	8	99	

○ 2공구(변경없음)

구분		규 모				연장(m)	관리처분사항
		류 별	등 급	번 호	폭원(m)		
14 노선 (면적 : 50,385 m <sup>2</sup> )							아산시장 관리
기정	주간선도로	광로	3	1	45	1,414 (645)	
기정	집산도로	중로	1	21	22.5	805	
기정	특수도로	중로	1	22	20	17	
기정	집산도로	중로	1	60	22.5	278	
기정	국지도로	중로	2	33	17.5	263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29	12	166	
기정	국지도로	중로	3	68	15	378	
기정	특수도로	소로	1	118	10	10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21	4	27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22	4	27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170	3	254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171	4	10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172	4	10	
기정	특수도로	소로	3	173	4	10	

○ 광로3-1호선의 연장(645m)은 구역 내에 포함되는 이순신대로 가감속차선의 제원임

나. 주차장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관리처분사항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합 계			10,249	-	10,249	
제21호주차장	노외주차장	탕정면 용두리 1-14 일원	3,757	-	3,757	아산시장 관리
제22호주차장	노외주차장	탕정면 용두리 1-14 일원	737	-	737	아산시장 관리
제23호주차장	노외주차장	탕정면 갈산리 630-4 일원	1,752	-	1,752	수요자 자체관리
제24호주차장	노외주차장	탕정면 갈산리 630-2 일원	4,003	-	4,003	아산시장 관리

다. 공원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관리처분사항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합 계			39,650	-	39,650	
제12호공원	근린공원	탕정면 용두리 1-8번지 일원	16,028	-	16,028	아산시장 관리
제4호공원	소공원	탕정면 용두리 1-8번지 일원	1,512	-	1,512	
제17호공원	소공원	탕정면 용두리 1-1번지 일원	1,247	-	1,247	
제13호공원	근린공원	탕정면 갈산리 665-1번지 일원	17,263	-	17,263	
제5호공원	소공원	탕정면 갈산리 634-3번지 일원	3,600	-	3,600	

라. 녹지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관리처분사항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합 계			119,704	-	119,704	
녹지100	완충녹지	탕정면 용두리 2-1번지 일원	26,306	-	26,306	아산시장 관리
녹지101	완충녹지	탕정면 용두리 1-16번지 일원	54,648	-	54,648	
녹지102	완충녹지	탕정면 용두리 1-14번지 일원	5,792	-	5,792	
녹지103	완충녹지	탕정면 용두리 9번지 일원	5,653	-	5,653	
녹지104	완충녹지	탕정면 갈산리 607-15번지 일원	4,674	-	4,674	
녹지105	완충녹지	탕정면 갈산리 605-23번지 일원	4,572	-	4,572	
녹지109	완충녹지	탕정면 갈산리 633-7번지 일원	5,342	-	5,342	
녹지110	완충녹지	탕정면 갈산리 609-9번지 일원	8,927	-	8,927	
녹지119	완충녹지	탕정면 갈산리 630-8번지 일원	3,790	-	3,790	

마. 학교(변경없음)

구 분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관리처분사항
계			30,436	
학교3	초등학교	탕정면 갈산리 628-9번지 일원	15,229	수요자 자체관리
학교3	중등학교	탕정면 갈산리 627-10번지 일원	15,207	수요자 자체관리

바. 용수공급시설(변경없음)

① 용수공급계획

구 분	용 수 량 (m <sup>3</sup> )		공급계획	관리처분사항
	기정	변경		
합 계	5,563	5,563		
1공구	소 계	2,226	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은 삼성SDI아산 기숙사 앞 기존관로(D300mm)에서 분기하여 계획상수관(D255mm, L=2.9km)을 통해 공급	아산시장 관리
	공업용수	2,107		
	생활용수	119		
2공구	소 계	3,337	생활용수 공급은 탕정신배수지에서 계획상수관(D250mm, L=1.6km)을 통해 공급	
	생활용수	3,337		

② 용수인입시설

○ 1공구



○ 2공구



③ 관로계획

○ 1공구

구 분	관 경	수 량(m)		관리처분사항
		송수관로(m)	생활용수,공업용수(m)	
계		2,900	3,094	
PE수도관	D25	-	120	아산시장 관리
PE수도관	D50	-	52	
PE수도관	D75	-	-	
PE수도관	D100	-	583	
PE수도관	D150	-	1,758	
PE수도관	D200	2,900	466	
PE수도관	D250	-	-	

○ 2공구

구 분	관 경	수 량(m)			관리처분사항
		송수관로(m)	생활용수(m)	공업용수(m)	
계		1,600	1,920	-	
PE수도관	D25	-	18	-	아산시장 관리
PE수도관	D50	-	-	-	
PE수도관	D75	-	191	-	
PE수도관	D100	-	672	-	
PE수도관	D150	-	231	-	
PE수도관	D200	-	808	-	
PE수도관	D250	1,600	-	-	

사. 유수지(변경없음)

구 분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관리처분사항
계			11,209	
유수지6	저류시설	탕정면 용두리 11번지 일원	3,639	아산시장 관리
유수지7	저류시설	탕정면 갈산리 627-12번지 일원	7,570	

아. 하수도시설(변경없음)

○ 1공구

구 분		관 경	수 량(m)	관리처분사항
우수	계	-	6,795	아산시장 관리
	암거	1.5 X 1.5	521	
		1.5 X 2.0	154	
		2.0 X 2.0	161	
		2.0 X 2.5	54	
		2.5 X 2.0	164	
		2.5 X 2.5	161	
		2.5 X 3.0	56	
	PE이중벽관	D250	1,037	
	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	D450	710	
		D600	151	
		D800	467	
D1,000		374		
D1,200		326		
오수	PVC이중벽관	D150	126	
		D300	2,333	

○ 2공구

구 분		관 경	수 량(m)	관리처분사항
우수	계	-	4,833	아산시장 관리
	암거	1.5 X 1.5	200	
		2.0 X 1.5	80	
		2.0 X 1.8	17	
		2.5 X 2.0	129	
	PE이중벽관	D250	1,176	
	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	D450	426	
		D600	158	
		D800	477	
		D1,000	259	
		D1,200	375	
	오수	PVC이중벽관	D150	
D300			1,392	

자. 수질오염방지시설(변경없음)

구 분	시설의세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관리처분사항
합 계	-	1개소	4,136	아산시장 관리
수질오염방지시설	오·폐수 처리시설	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9번지 일원	4,136	

차. 가로등시설(변경없음)

구 분		수 량	관리처분사항
가로등	가로등 제어반	8	아산시장 관리
	9m, 1등용	131	
	10m, 1등용	62	

하. 교통안전시설(변경없음)

구 분	수 량	관리처분사항
삼각표지판	35	아산시장 관리
원형표지판	4	
반사경	2	
갈매기표지판	6	
교통신호등	61	

## 6. 그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가. 분양계획(변경없음)

#### ① 분양대상

- 위치 :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, 갈산리 일원
- 면적(산업단지 총면적) : 685,379㎡

구 분	면 적(㎡)	비 고
합 계	411,694	
산업시설구역	236,789	
공장시설용지	202,440	
복합용지	34,349	
지원시설구역	174,905	
지원시설용지	9,143	
공동주택용지	136,974	
학교	27,036	
주차장	1,752	

#### ② 분양방법

지원시설 → 일반공개경쟁입찰

#### ③ 분양가격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1항, 동법시행령 제40조1항 및 4항에 의거 분양 가격 결정

#### ④ 분양대금 납부방법 / 시기

구 분	계약금	중 도 금				잔 금
		1차	2차	3차	4차	
납 부 율	10%	20%	20%	20%	20%	10%
납부기간	계약체결시	분양계약 체결 후 4개월이내	1차 중도금 납부 후 4개월이내	2차 중도금 납부 후 4개월이내	3차 중도금 납부 후 4개월이내	토지사용시 또는 소유권 이전시

#### ⑤ 연체료

- 중도금 약정일로부터 연체시 연12%를 일일기산하여 부과

#### ⑥ 체납자에 대한 조치

- 6개월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 상실통보
- 기한이익 상실통보 이후 미납잔대금 전액에 대한 청구이후 미납시 기한이익의 상실을 사유로 용지매매계약 해제

## 나. 세부 분양계획(변경)

구 분		면 적(m <sup>2</sup> )		구성비(%)		분양여부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유상(m <sup>2</sup> )	무상(m <sup>2</sup> )
계		685,379	685,379	100.0	100.0	411,694	273,685
산업 시설 구역	소 계	236,789	236,789	34.5	34.5	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제외	13,127	13,127	1.9	1.9	○	
	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	138,557	132,147	20.2	19.3	○	
	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	17,854	24,264	2.6	3.5	○	
	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	32,902	32,902	4.8	4.8	○	
	복합용지(지식산업센터)	34,349	34,349	5.0	5.0	○	
지원 시설 구역	소 계	174,905	174,905	25.5	25.5		
	공동주택용지	136,974	136,974	20.0	20.0	○	
	근린생활시설	9,143	9,143	1.3	1.3	○	
	학교	27,036	27,036	3.9	3.9	○	
	주차장	1,752	1,752	0.3	0.3	○	
공공 시설 구역	소 계	114,331	114,331	16.7	16.7		
	도로	87,341	87,341	12.7	12.7		○
	보행자전용도로	1,896	1,896	0.3	0.3		○
	주차장	8,497	8,497	1.2	1.2		○
	관리사무소	1,043	1,043	0.2	0.2		○
	오폐수시설	4,136	4,136	0.6	0.6		○
	유수지	11,418	11,418	1.7	1.7		○
녹지 구역	소 계	159,354	159,354	23.3	23.3		
	근린공원	33,291	33,291	4.9	4.9		○
	소공원	6,359	6,359	0.9	0.9		○
	완충녹지	119,704	119,704	17.5	17.5		○

주1)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총 면적은 685,379m<sup>2</sup> 이며 그 중 관리처분 대상면적은 236,789m<sup>2</sup>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·지원시설용지 등(174,905m<sup>2</sup>)은 제외함.

다. 입주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입주내용(2024년 4월 현재)					
	합계		제조업체		지원시설	
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	업체수	면적(㎡)
입주업체	5	202,637	2	52,137	3	150,500
향후계획	미정	209,057	미정	184,652	미정	24,405

라. 토지등의 관리처분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면적(㎡)		구성비(%)		분양여부		비고	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유상(㎡)	무상(㎡)			
합계	685,379	685,379	100.0	100.0	411,694	273,685			
가처분 대상 용지	소계	236,789	236,789	34.5	34.5	236,789	-		
	산업 시설 구역	공장시설용지	202,440	202,440	29.5	29.5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	복합용지	34,349	34,349	5.0	5.0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소계	174,905	174,905	25.5	25.5	174,905	-		
	지원 시설 구역	공동주택용지	136,974	136,974	20.0	20.0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	지원시설용지	9,143	9,143	1.3	1.3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	학교	27,036	27,036	3.9	3.9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	주차장	1,752	1,752	0.3	0.3	○	-	수요자 자체관리
	국가/지자체 무상 귀속 시설 용지	소계	273,685	273,685	40.0	40.0	-	273,685	
		공공 시설 구역	주차장	8,497	8,497	1.2	1.2	-	○
도로			87,341	87,341	12.7	12.7	-	○	아산시장 관리
보행도로			1,896	1,896	0.3	0.3	-	○	아산시장 관리
관리사무소			1,043	1,043	0.2	0.2	-	○	아산시장 관리
오피수시설			4,136	4,136	0.6	0.6	-	○	아산시장 관리
유수지			11,418	11,418	1.7	1.7	-	○	아산시장 관리
녹지 구역		근린공원	33,291	33,291	4.9	4.9	-	○	아산시장 관리
		소공원	6,359	6,359	0.9	0.9	-	○	아산시장 관리
		완충녹지	119,704	119,704	17.5	17.5	-	○	아산시장 관리

## 마. 입지여건 (변경)

- 지리적 위치 :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, 갈산리 일원으로서 아산시와 약 5km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, 사업대상지 남측에는 장항선 배방역이 있음
- 도로 : 천안-아산고속도로 탕정 IC와 약 3km 거리에 연결되며, 국도 43호선과 1.2km 인접해 있음
- 공급처리 총괄계획

시 설 명		총 계 획	비 고
용 수	공 업	2,107(m <sup>3</sup> /일)	
	생 활	1공구 : 119(m <sup>3</sup> /일) 2공구 : 3,337(m <sup>3</sup> /일)	
전력(최대부하)		19,941(KW)	
열수료량		44,072(toe/년)	
통 신 시 설		6,073회선	
단지내 도로		89,237(m <sup>2</sup> )	
수질오염방지시설		4,136(m <sup>3</sup> )	

### ○ 상·하수도

#### • 상수도

- 1공구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은 삼성SDI아산 기숙사 앞 기존관로(D300mm)에서 분기하여 계획상수관(D255mm, L=2.9km)을 통해 공급
- 2공구 생활용수 공급은 탕정신배수지에서 계획상수관(D250mm, L=1.6km)을 통해 공급

#### • 하수도

- 1공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·폐수는 자연유하 방식에 의해 사업지구 내 오폐수처리시설에 집수 후 배출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우수압송관로를 통하여 사업지구 인근 하천(용두천)으로 방류토록 계획
- 2공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연유하방식에 의해 집수 후 우수간선관로를 신설 및 기존차집관로 개량을 통해 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

### ○ 전력·통신

- 전력 : 필요전력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탕정변전소에서 공급
- 통신 : KT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

## 바.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(변경)

### ① 산업시설구역(변경)

#### - 1공구(변경)

구 분	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	
시설명	도면 번호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	
산업 시설 구역	A1	A1-1 A1-2 A1-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			
			중분류	업 종				
		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제외				
산업 시설 구역	A2	A2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70% 이하	250% 이하	4층 이하
			중분류	업 종				
			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	
산업 시설 구역	A4	A4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			
			중분류	업 종				
			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

구 분	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	
시설명	도면 번호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	
산업 시설 구역	A5	A5-1 A5-3 A5-4 A5-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			
			중분류	업 종				
			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	
산업 시설 구역	A5	A5-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70% 이하	250% 이하	4층 이하
			중분류	업 종				
			29	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	
산업 시설 구역	A6 A7	A6-1 A6-2 A7-1 A7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의 공장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/ul>					
			중분류	업 종				
			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	

- 2공구(복합용지)(변경없음)

구 분	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시설명	도면 번호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
산업 시설 구역	A	A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(유치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25~C33, J58~J63, M70~M73 및 부대시설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장 (제조시설 및 부대시설) (유치업종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25~C33)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</li> <li>• 단, 산업시설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 할 경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정용도상의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 (단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제외) 및 노유자시설에 한함</li> <li>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</li> </ul>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70% 이하	350% 이하	18층 이하

② 지원시설구역(변경없음)
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건축법시행령 부표(건축물의 용도분류)에 의한 공동주택, 기숙사, 근린생활시설, 업무/판매시설, 근린공공시설 등의 건축물로서 세부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

○ 1공구(변경없음)

구 분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시설명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
지원 시설 구역	B1 B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</li> <li>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</li> </ul>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70% 이하	250% 이하	7층 이하

※ B5 관리사무소용지 추가

○ 2공구(변경없음)

구 분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	
시설명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	
지원 시설 구역	B2 B3 B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란 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)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</li> <li>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</li> <li>•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</li> </ul>		70% 이하	350% 이하	7층 이하	
		불허용도			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, 제6조관련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(단, 상대정화구역내에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)</li> </ul>					

③ 주거시설용지(변경없음)

- 1공구(해당없음)
- 2공구

구 분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시설명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
주거 시설 용지	C1	·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「주택법」에 의한 부대복리시설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35% 이하	30층 이하 중층 배치 구간 15층 이하 평균층수 23층
		형태				
		· 아파트 주동 6호 조합 이내 · 주호동내 형태·입면상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				
		배치				
		·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이 되도록 배치 · 경관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배치 · 중층배치구간은 15층 이하의 주동을 배치 · 단지 중앙부에 북측 주거지역(지중해마을)과 남측 곡교천을 연계하는 폭 30m의 통경축이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 · 학교시설, 근린공원 및 버스정류장으로의 단지 내 보행동선이 연결 가능하도록 배치				
주거 시설 용지	C2	·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「주택법」에 의한 부대복리시설	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35% 이하	27층 이하 평균층수 23층
		형태				
		· 아파트 주동 6호 조합 이내 · 주호동내 형태·입면상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				
		배치				
		·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이 되도록 배치 · 경관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배치 · 당지 중앙부에 북측 공동주택용지(C1)와 남측 곡교천을 연계하는 폭 30m의 통경축이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 · 학교시설과 단지 내 보행동선이 연결 가능하도록 배치				

④ 공공시설구역(변경없음)

-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외의 공공, 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
- 산업시설용지가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, 오·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축물

○ 1공구

구 분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시설명	위치	지정용도	불허 용도			
공공 시설 구역	P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</li> </ul>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 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	허용 용도 이외 의 용도	90% 이하	200% 이하	3층 이하
	P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(주차전용건축물 제외)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</li> </ul>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 설치	허용 용도 이외 의 용도	20% 이하	20% 이하	1층 이하
	D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」 제118조 유수지</li> </ul>	허용 용도 이외 의 용도	-	-	-
	W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</li> </ul>	허용 용도 이외 의 용도	20% 이하	80% 이하	2층 이하

○ 2공구

구 분		용 도		건폐율 (%)	용적율 (%)	높이 (m)
시설명	위치	지정용도	불허용도			
공공 시설 구역	P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</li> <li>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</li> <li>-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(안마원 제외)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</li> <li>-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1층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</li> </ul>		90% 이하	270% 이하	3층 이하
		불허용도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li>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에 따른 시설(단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)</li> </ul>					
	P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(주차전용건축물 제외)</li> <li>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</li> <li>-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 설치</li> </ul>		20% 이하	20% 이하	1층 이하
불허용도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용용도 이외의 용도</li> </ul>						
E1, E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8조 학교</li> </ul>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250% 이하	5층 이하	
D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18조 우수지</li> </ul>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-	-	-	

⑤ 녹지시설구역

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

**사. 사후관리계획(변경없음)**

1) 목 표
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

2) 세부관리계획
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과 「산업 단지관리지침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
-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(나대지 등)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. 다만,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.
- 경매,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, 법정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.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, 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」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.
-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및 공해배출 저하 유도
-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, 관계법령 및 기준준수 지도, 관리

3)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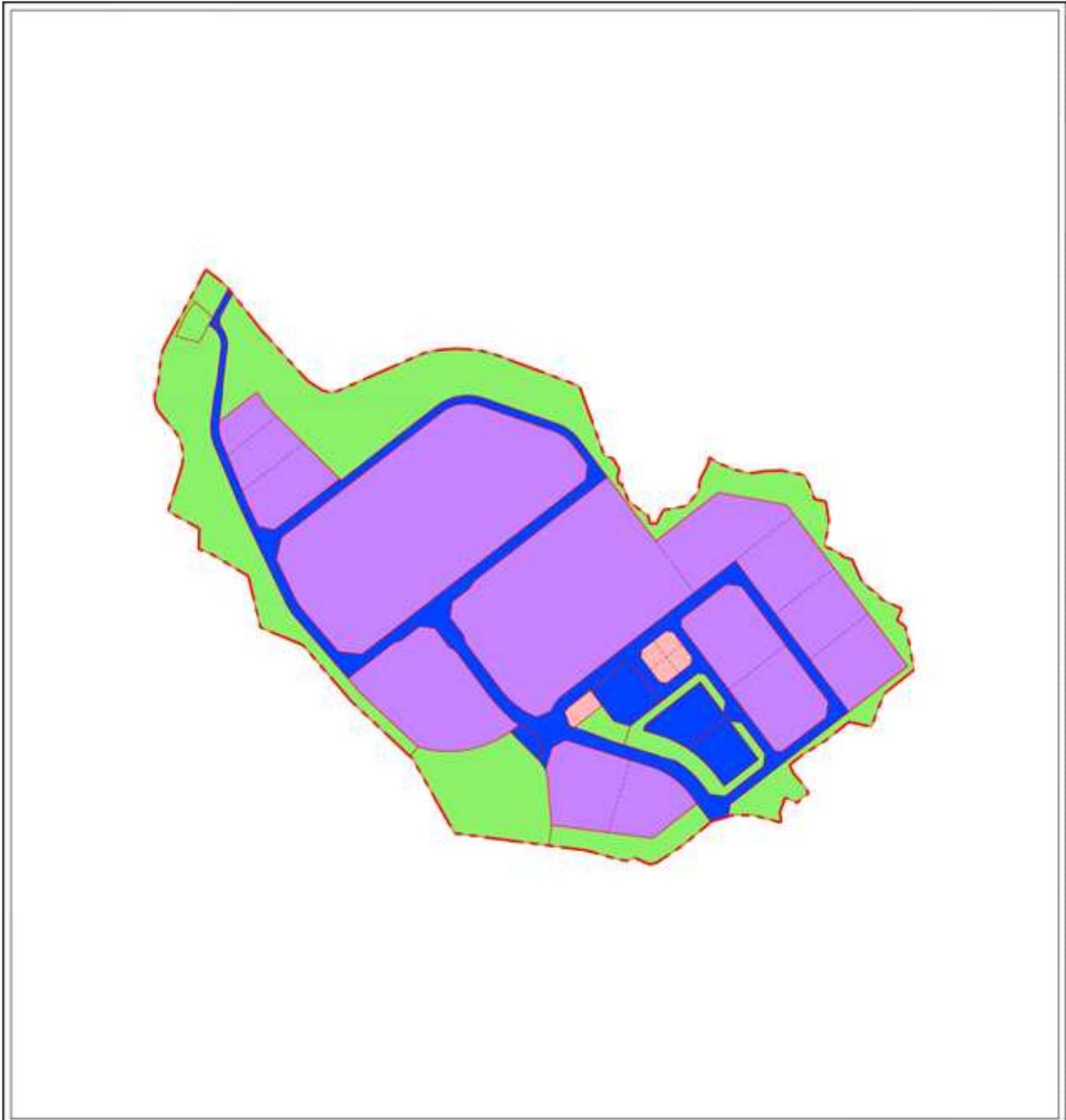
- 공장설립 지원
  - 공장설립업무 인·허가 절차 지원
  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함.
- 근로자 복지
  - 입주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, 기숙사(생활관), 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기타(관계법령)
 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  -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
 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
**7. 지형도면 고시사항**

지역·지구명	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(㎡)			
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 지 구 역
산업단지 용도별 구역	236,789	147,160	142,076	159,35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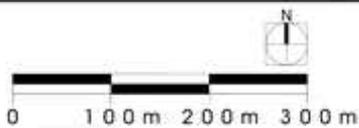
【붙임】 관리기본계획도

< 용도별구획도(1공구) >


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1공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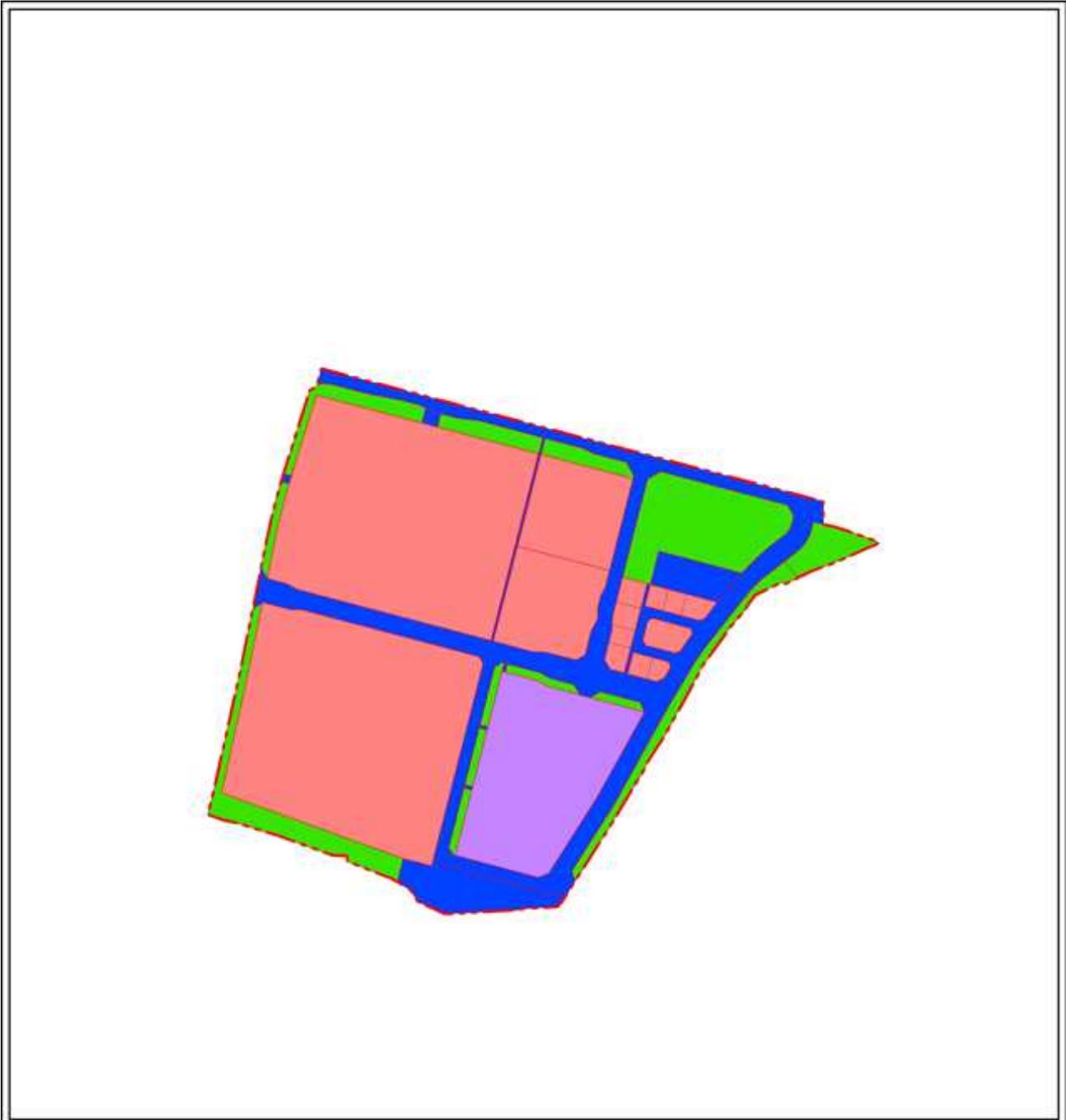
용도별구획도



범  
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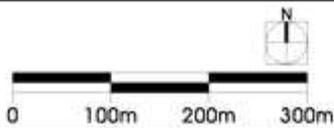
- 구역계
- 산업시설구역
- 지원시설구역
- 공공시설구역
- 주택구역

< 용도별구획도(2공구) >


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2공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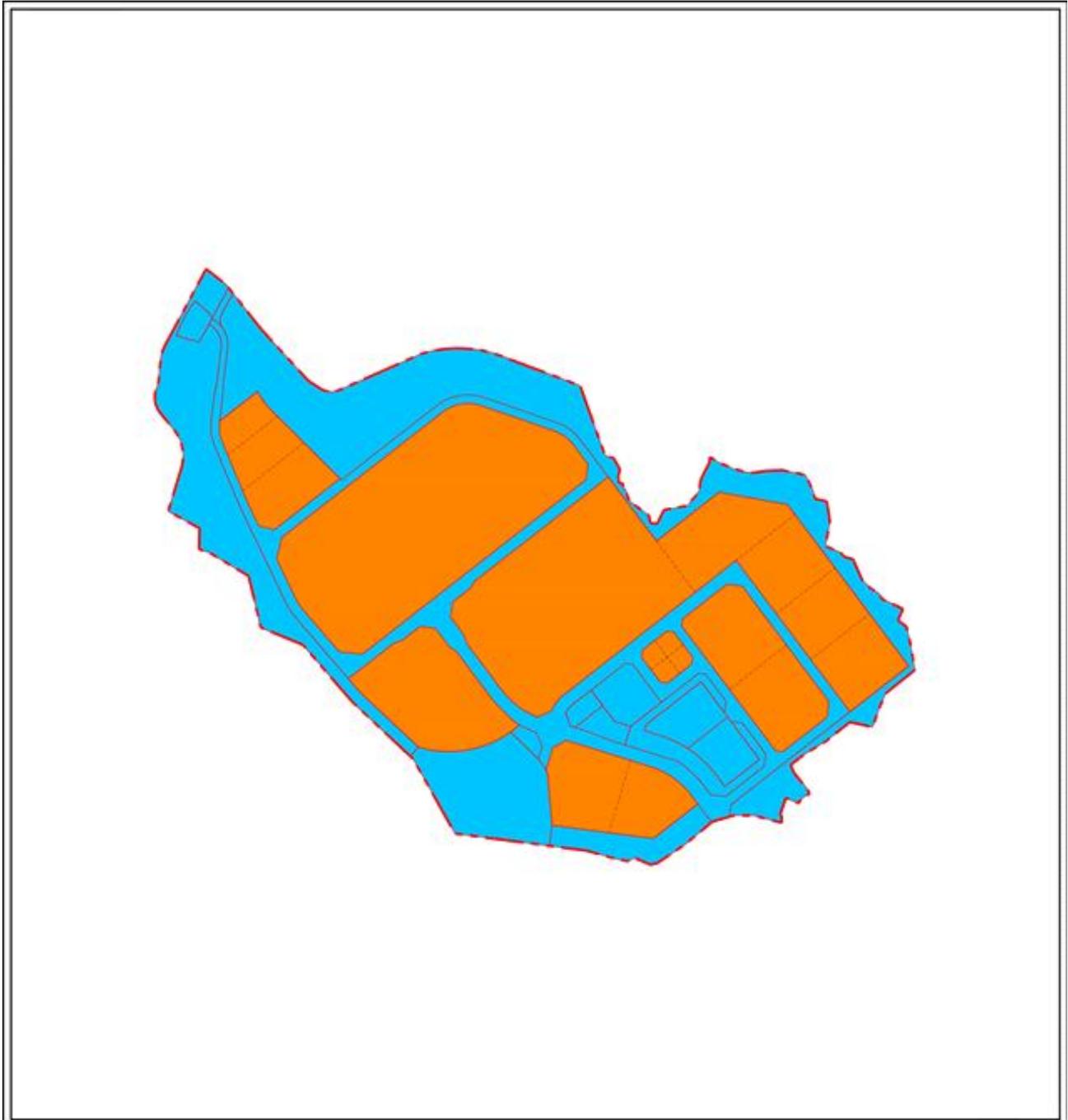
용도별구획도



범  
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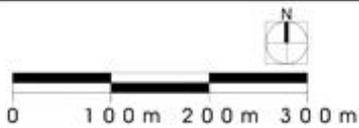
-  구 역 계
-  산업시설구역
-  자원시설구역
-  공공시설구역
-  녹 지 구 역

< 관리처분계획도(1공구) >


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1공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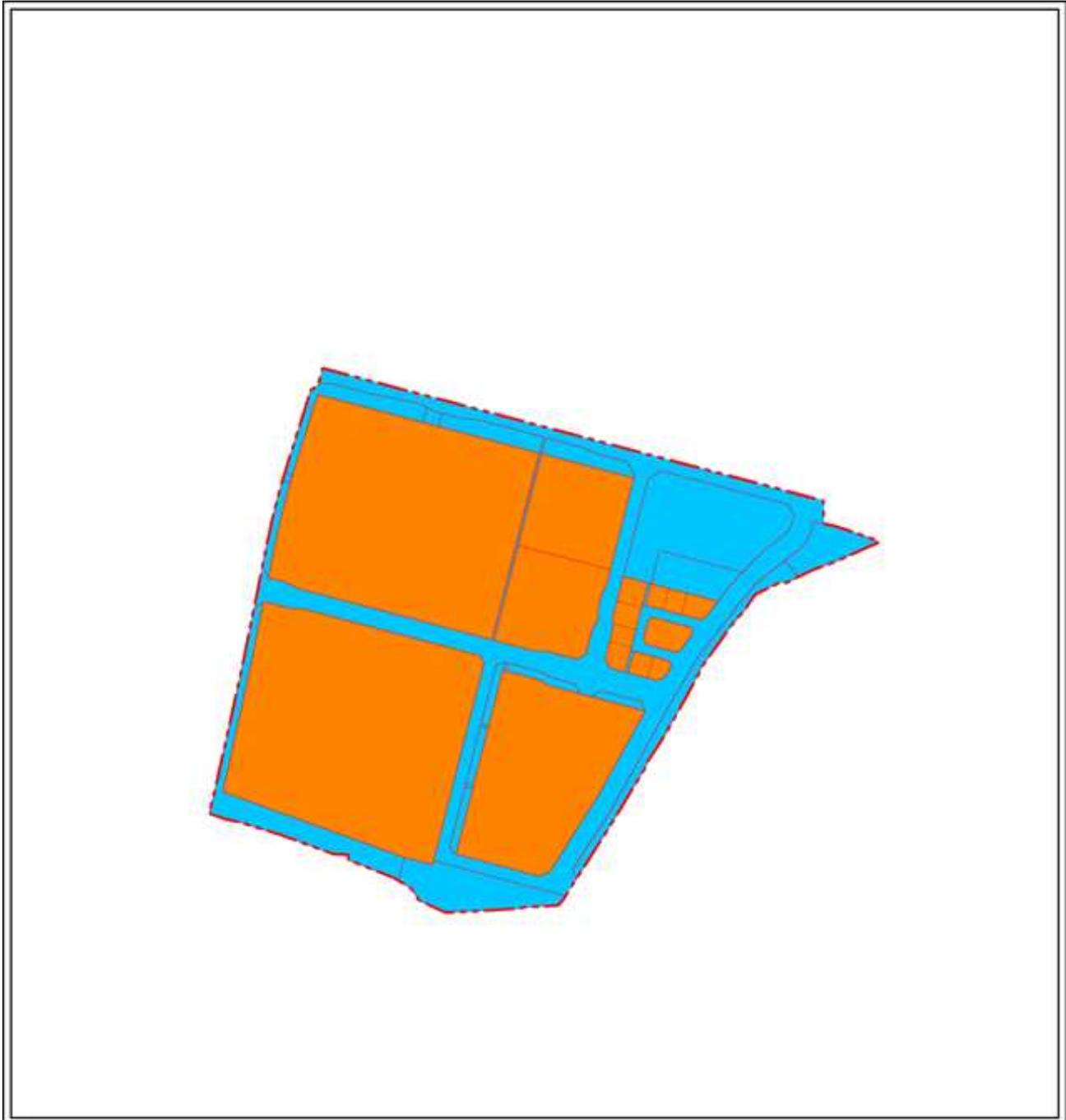
관리처분계획도



범  
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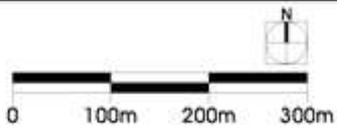
-  구 역 계
-  수요자 자체관리
-  아산시장 관리

< 관리처분계획도(2공구) >


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2공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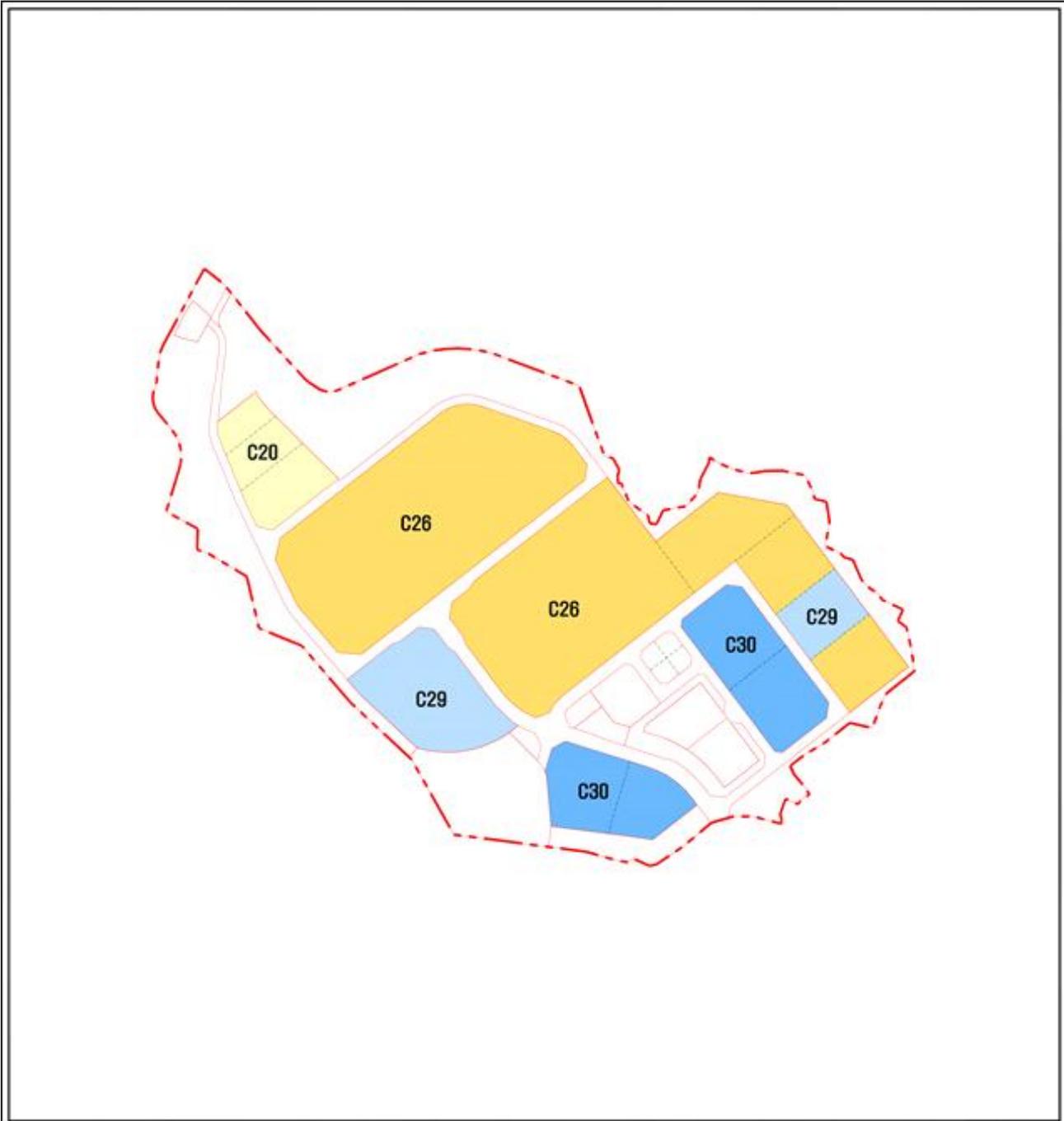
용도별구획도



범  
례

-  구 역 계
-  수요자 자체관리
-  아산시장 관리

< 유치업종계획도(1공구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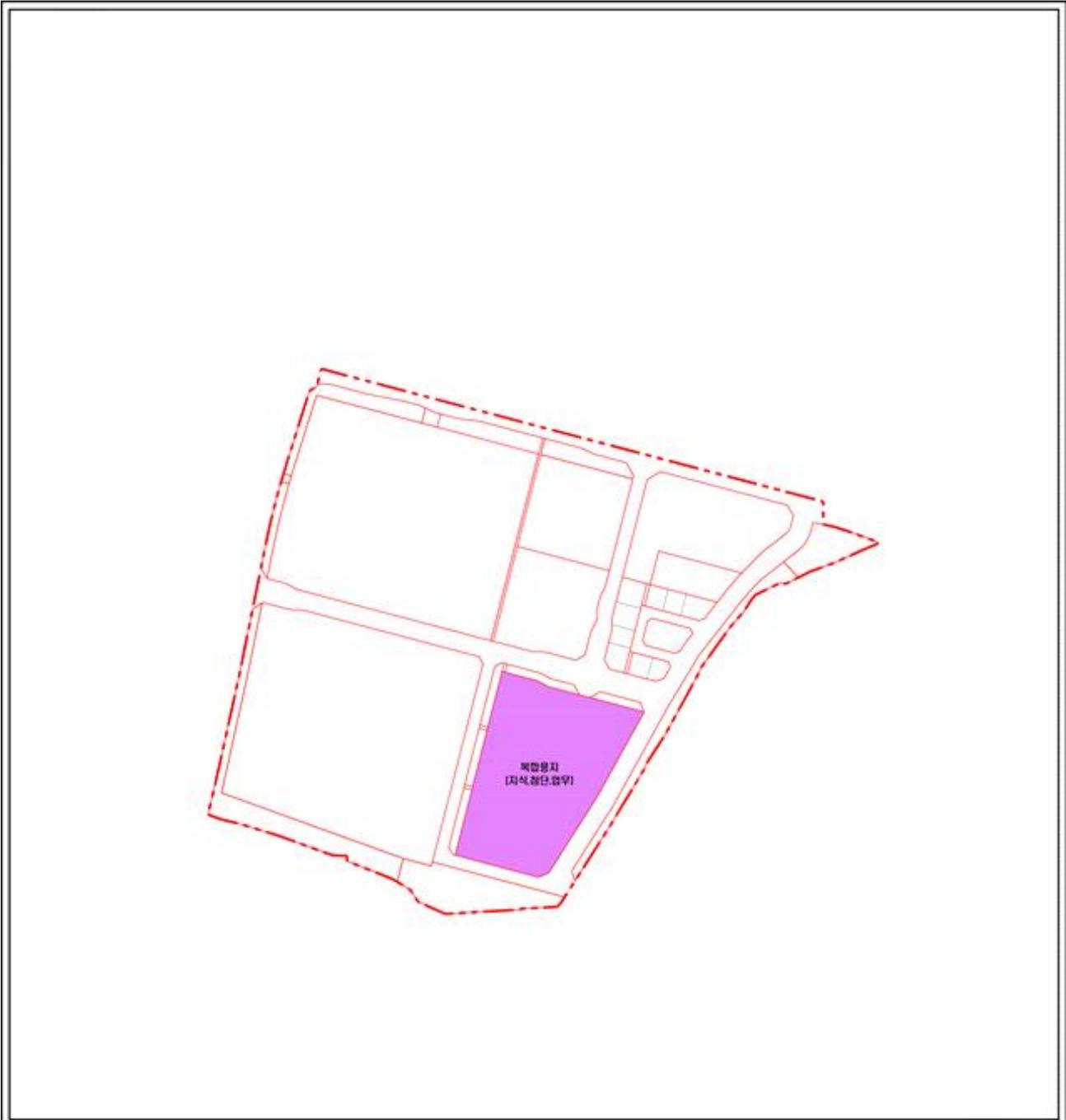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1공구

유치업종계획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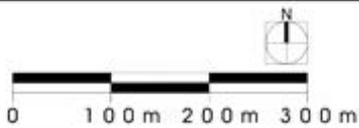
-  구 역 계
-  (C20)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: 의약품제외
-  (C26)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-  (C29)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 (C30)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< 유치업종계획도(2공구) >



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2공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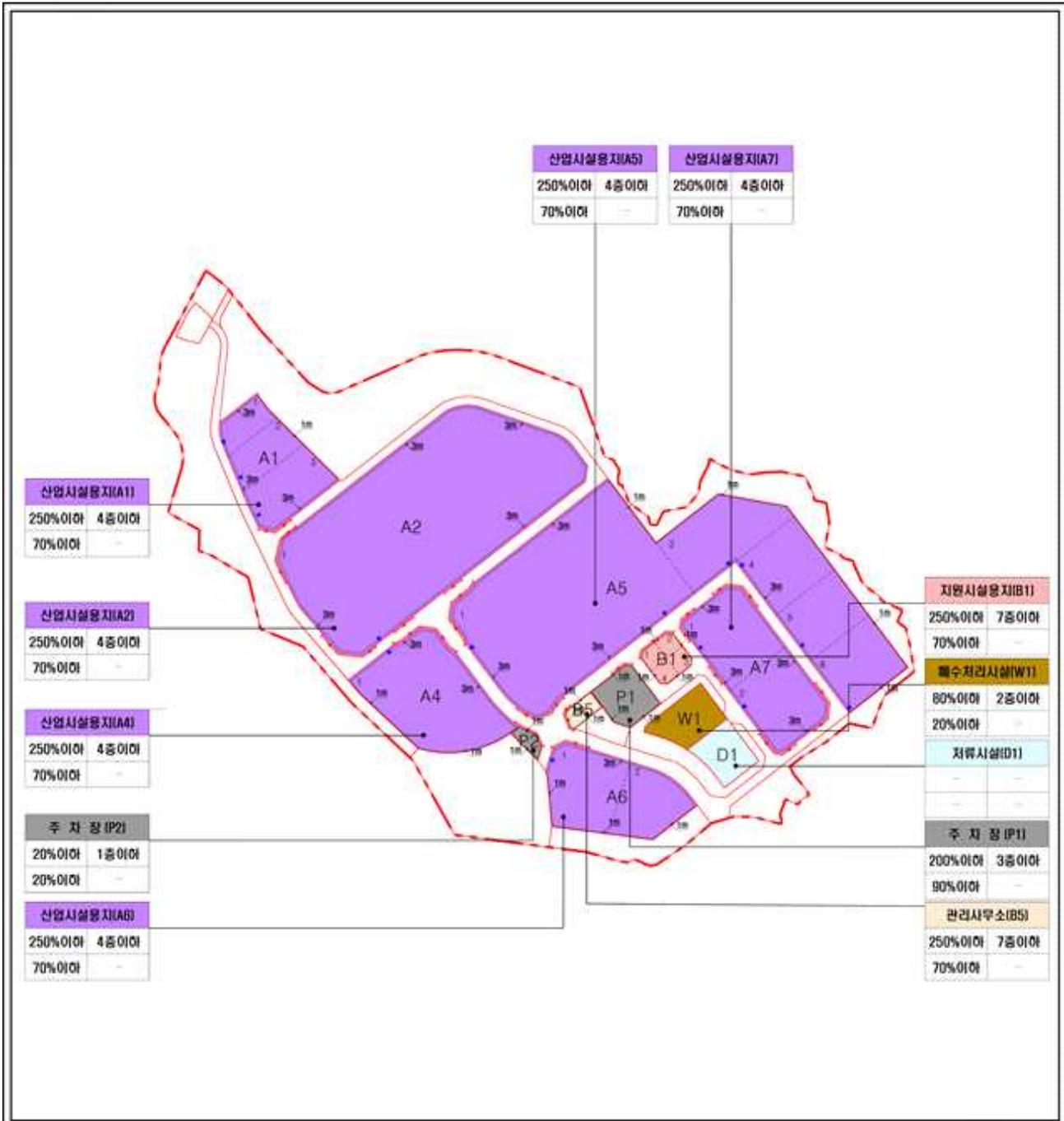
용도별구획도



범  
례

-  구역계
-  (C25-33, J58-63, M70-73) 복합용지

<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1공구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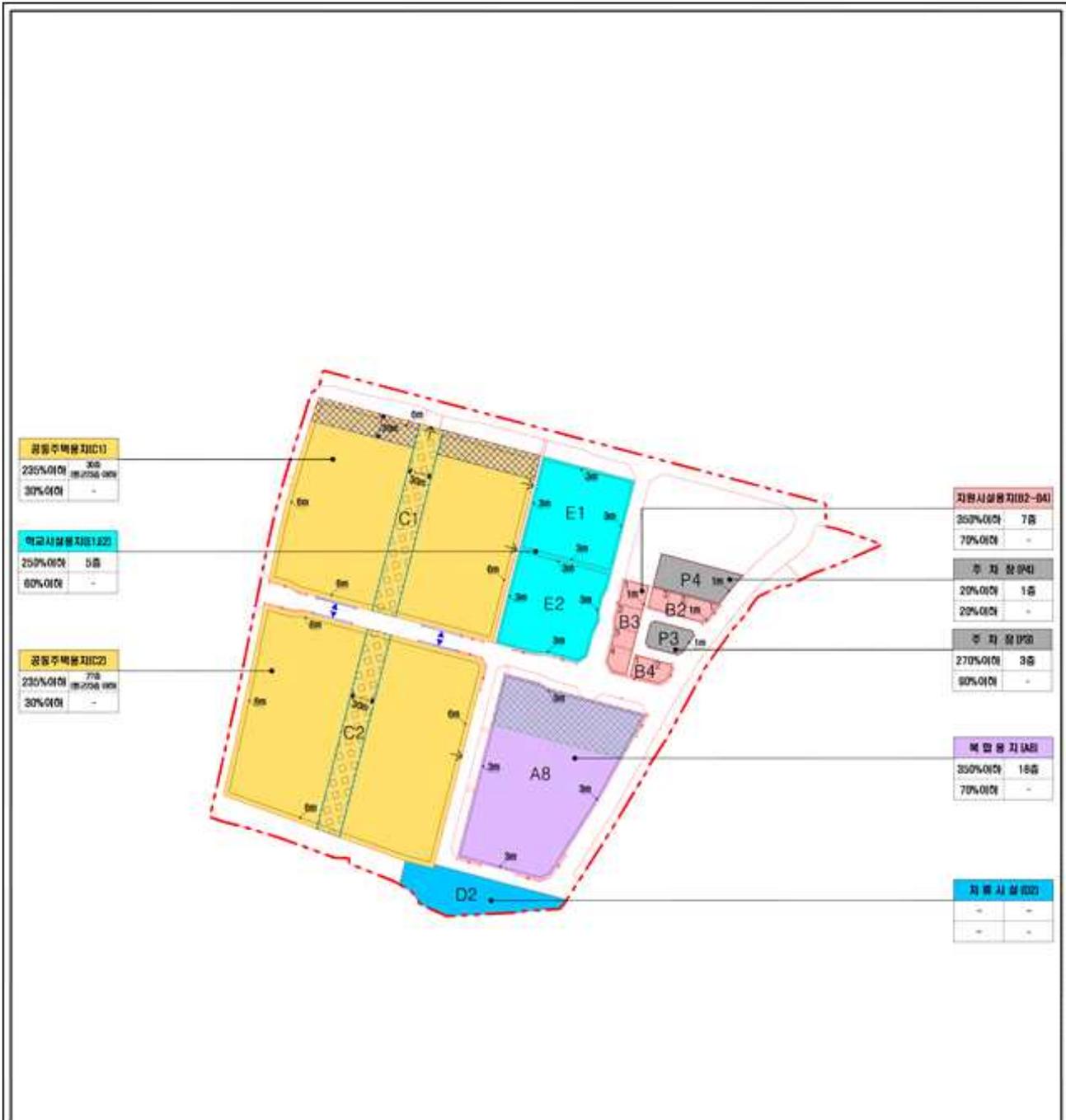
**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1공구**

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

**범  
례**

구역계	주차장용지																
지적영계선	폐수처리시설용지																
산업시설용지	선축한계선																
지원시설용지	차양출입통허구간																
관리사무소용지	차양출입구간(관상)																
유수처용지	<table border="1" style="font-size: small;"> <tr><td>지</td><td>용</td><td>용</td><td>도</td></tr> <tr><td>용</td><td>역</td><td>용</td><td>역</td></tr> <tr><td>관</td><td>계</td><td>용</td><td>역</td></tr> <tr><td>관</td><td>계</td><td>용</td><td>역</td></tr> </table>	지	용	용	도	용	역	용	역	관	계	용	역	관	계	용	역
지	용	용	도														
용	역	용	역														
관	계	용	역														
관	계	용	역														
수도공급설비용지																	

<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2공구) >



**아산 탕정테크노  
일반산업단지 - 2공구**

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

0 100m 200m 300m

**범례**

지구단위계획구역	학교용지	중층비주거용지(15층이하)
폐지경계선	주거용지	중층비주거용지(15층이상)
상업시설용지	건축한계선	
지원시설용지	차량출입통행구간	
주거시설용지	차량출입허용구간	
특수저용지	동경축확보구간	

제출용도  
용적률(%)  
층수